

	대학보건실 운영 규정		문서번호	3-4-13	
			제정일	2012. 12. 01.	
			개정일	2013. 03. 01.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 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 대학보건실(이하 ‘보건실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보건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일과 중 학생, 교직원의 1차 건강관리
2. 학생의 정기 건강 검사 후 추후관리
3. 각종 예방접종의 위탁, 실시
4. 학교 행사에 구급약품 지원
5. 학생의 건강증진요구에 대처

제3조(조직) ① 보건실에는 보건실장과 간호사를 둘 수 있다.

② 보건실은 대학의 지역간호사업소 내에 위치한다.

제4조(보건실장) ① 보건실장은 본 대학 교원으로써 간호사면허 소지자 중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보건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5조(간호사) ① 간호사는 간호사면허소지자로 한다.

② 간호사는 대학보건실 운영 규정 제2조의 내용을 담당한다.

제6조(보건실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보호) ① 보건실은 이용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
②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과 법례에 따른다.

제8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 보건실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로 충당한다.

② 대학은 보건실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	대학보건실 운영 규정		문서번호		3-4-13	
			제정일		2012. 12. 01.	
			개정일		2013. 03. 01.	
	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